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사례. 13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신청인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 건	2017서울조정674·675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7. 4. 6.
처리결과	취하(추후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전 이사장에게 본인의 임용 관련 뇌물을 준 혐의와 이사의 친척을 채용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무혐의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7,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혐의 처분 및 무죄판결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보도하여 이를 확인한 신청인이 조정기일 이전에 사건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1

- 『울산 ○○고→△△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5년 12월 3일자 사회면)

■ 내 용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로부터 울산지역의 대표적 비리사학으로 낙인 찍혀온 울산 ○○고의 학교법인 전·현직 이사장과 현 교장·교감·행정실장, 재단 이사 등 6명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고가 교명을 바꿔 내년 신입생을 받기로 하자 지역계에서 “교명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 ○○고는 지난 1989년 ○○군 ○○면 ○○에 일반고로 개교했지만 주변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공해, 모기의 습격 등으로 학생들이 입학에 기피해 오랫동안 이전 요구가 강한 학교였다.

특히 지난 1999년 완공한 학교 체육관의 공사비 횡령 혐의로 전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지난 2011년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다시 학사 개입과 학교 부지 매각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6월 22일 이사회가 이아무개 전 이사장을 해임하자 전 이사장은 “교감·교장 승진 때의 금품 수수 등 현 이사진과 학교장 등이 공동비리가 있다”고 자폭성 행보를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당사자들은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사법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아무개 전 이사장을 비롯해 교장 출신인 류아무개 현 이사장, 현직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이사 등 6명은 전 이사장의 자폭성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기피 등으로 지난 2년간 입학생을 받지 못했던 ○○고는 2016년에는 학교장 입학전형으로 일반과정 4개 학급 100명, 체육 중점과정 2개 학급 40명 등 모두 140명의 학생을 선발키로 하고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

특히 ○○고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학교명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키로 하고 오는 3월부터 새 학교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학교재단 및 학교 구성원이 지금도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이름만 바꾼다고 이미지가 쇠신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고의 근본적인 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이름만 바꾼다고 깨끗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겠나”며 “○○고 내에 자리 잡은 비리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서 ○○고가 완전히 새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2

- 『울산 ○○고 전 이사장, 현 교장·행정실장 등 기소』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6년 1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지난 십수 년간 지역에 파장을 불러온 사학, 울산 ○○고의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현 교장·행정실장과 재단이사 등 4명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고 전 이사장의 뇌물 수수 등 폭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현 이사장은 이번 기소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지난 1989년 ○○군 ○○면 ○○에 일반고로 개교한 ○○고는 지난 1999년 완공한 학교 체육관의 공사비 횡령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 전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지난 2011년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이전과 매각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재현됐고, 지난 6월 22일 이사회가 이 전 이사장을 해임하자 이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과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지역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렀다.

이 전 이사장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현 이사장을 교장으로 임용할 당시 5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받기로 한 후 500만 원과 200만 원, 200만 원 등 모두 9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현 교장 임용 때도 1200만 원을 받았고, 행정실장을 채용할 때는 300만 원, 4년간 400만 원 등 모두 7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번에 기소된 이사의 인척을 채용하면서 행정실장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은 후 함께 나눠썼다.

이 전 이사장은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당시 언론사 취재진들에게 “나 자신은 그동안 나쁜 짓을 했지만 후배들이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학에서 더 이상 비리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현 이사장과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행정실장은 기자회견담회까지 열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폭로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고 사태에 대해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울산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법인 ○○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한○○)는 28일 울산시교육청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들로 관선 이사를 파견해 ○○고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울산지역 사립교육기관인 학교법인 ○○학원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울산 광역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문제해결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정대상보도3

■ 『○○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기사(오마이뉴스 2016년 3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울산 ○○고의 설립자인 학교법인 ○○학원 전 이사장과 현 교장·행정실장과 전 재단이사 등 4명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자수해 밝혔는데도 일부는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이사장은 또한 “감독청인 울산시교육청이 학연, 지연 등으로 안일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의 뇌물수수 등 폭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해 현 교장·행정실장, 전 이사 등 4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번 진정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현 이사장이 기소되지 않은 것 등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때 학사 개입 등으로 울산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지금은 현 이사진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 법인 이사진 등과 자신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자신과 이들을 함께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그는 진정서에서 그 이유를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현 이사장은 교장 이사 임용조건으로 1차 5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200만 원 등 900만 원을 내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경찰에 자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교감을 임용할 당시 교감 조건으로 500만 원을, 현 교장을 교장 이상 시켜주는 등의 대가로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검찰은 교감은 무혐의 처분, 교장의 7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500만 원 건만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이어 “현 행정실장에게는 임용 당시 300만 원과, 그후 수차에 걸쳐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받았다”며 “또한 학교법인 전 이사의 조카를 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고 5000만 원을 차용증을 발급한 후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700만 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의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 30년 전통의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수한 나의 진술을 일부 묵살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하지만 지인들의 만류와 권고로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교육계에서는 지난해 경찰 내사중인 이아무개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던 울산시교육청이 현 이사진 일부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두 달이 가까워지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검찰에 기소된 사항과 관련해 이를 확인하고,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면서 “학연, 지연 등으로 안일한 감사를 했다는 부분은 확인된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1. 제목 : [추후보도문] “△△고(前 ○○고) 前 재단이사장 이모씨의 허위 자백 때문에 행정실장 비리 혐의 기소” 보도 관련

2. 본문 : 본지는 2015년 12월 3일 사회면 『울산 ○○고→△△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2016년 1월 28일 사회면 『울산 ○○고 전 이사장, 현 교장, 행정실장 등 기소』, 2016년 3월 15일 사회면 『○○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 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각 기사에서, △△고등학교(前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행정실장이 임용 당시 ○○고등학교 前 이사장에게 700만원을 줬다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교사 채용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고등학교 前 이사장이 모씨가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자 직위에 복귀하기 위해서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허위의 자백을 했던 것으로, ○○고등학교 前 이사장은 “김모 행정실장이 자신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았다”며 공연히 허위사실로 김모 행정실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알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취하

조정신청 후 이행결과

■ 『[추후보도] “△△고 전 재단이사장 허위자백 탓에 행정실장 비리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7년 4월 19일자 사회면)

■ 내 용

본지는 2015년 12월 3일 사회면 『울산 ○○고→△△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2016년 1월 28일 사회면 『울산 ○○고 전 이사장, 현 교장, 행정실장 등 기소』, 2016년

3월 15일 사회면 『○○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 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각 기사에서, △△고등학교(前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행정실장이 임용 당시 ○○고등학교 前 이사장에게 700만원을 줬다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교사 채용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전 이사장은 김 행정실장을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14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명됐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제명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사 건	2017서울조정678·679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노컷뉴스)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7. 4. 3.
처리결과	각하결정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시 의회에서 제명처분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추후보도와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중재부는 신청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언론중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해 각하결정 하였다.
- 병합사건 : 2017서울조정680~696(인터넷 매일일보, 인터넷 시민일보, 인터넷 신아일보, 아시아뉴스통신, 인터넷 내일신문, 인터넷 일간투데이, 인터넷 아주경제, 인터넷 환경일보, 뉴스시스), 2017서울조정705·706(시사통신)

조정대상보도

- 『○○시의회, 김○○ 의원 제명안 가결』 제하의 기사 (노컷뉴스 2015년 4월 20일자 사회면)

■ 내 용

○○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 김○○의원을 제명처분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11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긴 9명의 찬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가 낸 제명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들의 도박, 성관련 행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함에 따라 시의회가 지난달 19일 진상규명과 사실확인을 위해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김 의원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일 자치단체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에 따른 결원통지를 통보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1. 제목 : 민주당소속 시민단체선정 베스트 김○○의원, 피고 ○○시의회(의장: 나○○)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김의원 제명 결의, 김○○의원 2심 및 3심 대법원에서 승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5월 14일날 정치면에 ○○시의회, 김○○의원 제명안 가결이라고 기사화 했습니다.

신청인은 sns 등에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원들의 말만 듣고 신청인이 비방했다거나 비방했다라는 사실이 아닌 기사를 기사화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이어 3심에서도 김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2심 법원에서는

1. 김의원이 이 사건이 있기 약2년 전(제6대의회)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비를 빌린 것(1천만 원)을 제7대의회에서 문제삼을 수 없는 점(시간도과)
2. 수의계약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시의회 의회운영위원 회의실을 의장실로 변경하는 공사를 의원들 몰래 하려고 했던 의회사무국장(4급)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장인 원고 김○○ 의원위원장이 긴급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막았습니다.

그런 후, 의회사무국장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회가 아닌 시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제안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인사개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냄.

3. 조례심의 시 조례와 관련된 단체(참고 : 조례에 1개 단체가 2개 이상 시 위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인데, 3개 이상 위탁을 하고 있는 00원장이 의원에게 협박전화 함)에서 의원들에게 협박전화가 왔음.

그래서, 그 조례심의 시 비공개회를 하자고 ○○○○위원회(위원7명)에서 ○○○당 (현 ○○당) 김△△의원의 제안으로 6명이 찬성해서 비공개로 진행됨. 시의회에서는 원고(김○○)가 선동해서 비공개했다고 문제 삼음(그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윤리위에 상정할 안건이 없다보니 급조해서 만든 흔적임).

그러나, 법원에서는 ○○○당 김△△의원의 비공개회의 제안으로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비공개회를 한 것은 김의원이 선동했다고 보지 않음.

4. 원고(김○○)가 동료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도박 및 성매매 등을 했다고 기자회견 및 SNS에 올려 동료의원들간 분란을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기자회견 및 SNS에도 분란을 조장하거나 대부분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 선정 최고 베스트의원이었다는데, 이유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수의 의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사실도 아닌 내용 등을 가지고 제명까지 한 것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이 사건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가정도 흔들리게 됐으며 정치적으로는 그들에 의해서 “정치적 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그들 중 단 한사람도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지만, 경험해서는 안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됐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다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동료를 모해하는 사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의원은 위의 내용에 대해서 2심은 2016년 11월 3일 및 3심 대법원은 2017년 3월 9일 판결에서 이겼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각하결정

각하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서 ○○시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등으로 제명됐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은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추후보도와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요건을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명의결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언론중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인, 즉 형사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추후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4. 14.

사례. 15

지하철 역무원인 신청인이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 건	2017서울조정1966·1967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7. 10. 31.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하철 역무원인 신청인이 막차에서 내린 여대생을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 보도하고 신원이 드러나도록 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보도와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 측에서 추후보도 외에 포털 등에서 검색되는 잔존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해주는 대신 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1

-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8월 8일자 ‘뉴스 TOP10’ 프로그램)

■ 내 용

- ▷ 앵커 : 지하철 역무원이 막차에서 내린 여대생을 안내하면서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찾기 위해 녹화된 CCTV를

돌려보다 적발했습니다.

▷ 기자 : 늦은 밤,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한 여대생.

○○역에서 열차가 끊기자 열차에서 내려 역무원 A씨에게 나가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손으로 이곳 저곳 가리키며 길 안내를 한 A씨. 친절을 가장하며 뒤에선 여대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두 차례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여대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지하철역 CCTV를 살피던 경찰이 역무원의 범행을 확인한 것.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역무원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 안○○ /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장 : “CCTV를 통해서 범행 장면을 확인한 사안이었고, (조사 전에) 휴대폰에 들어있던 범행 파일은 다 지운 상태였고.”

역무원 A씨가 몰카를 찍은 범행 현장입니다. A씨는 지금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서울메트로 관계자 : “근무를 하고 있는거죠. 판결이 확정되면 감사실에서 내부 조사를…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경찰은 사건을 성범죄특별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정대상보도2

■ 『지하철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 제하의 보도 (채널A 2016년 8월 9일자 ‘뉴스 TOP10’ 프로그램)

■ 내 용

지하철 승객을 보호해야 할 역무원이 여자 승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역 출구를 찾는 여자 승객에게 길을

알려주는 척 하면서 흉측한 짓을 한 겁니다. <후 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기재 추후보도문을 채널A <뉴스 TOP10>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기재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1. 제목 : ‘지하철 역무원 여대생에게 몰카 혐의’ 무죄로 밝혀져
2. 본문 : 본 방송은 2016년 8월 9일 <뉴스 TOP10> 프로그램에서 “[단독] 지하철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역무원 A씨를 몰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결과, 역무원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17년 9월 22일 무죄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채널A <뉴스A> 프로그램에서 [별지 1] 기재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1]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채널A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 기사 하단에 추후보도문을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별지 2] 목록에 있는 게시물의 관리자들에게 이 사건 조정대상영상이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피신청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 보도 및 해당 인터넷 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별지 1]

1. **제목** : ‘지하철 역무원 여대생에게 몰카 혐의’ 무죄로 밝혀져
2. **본문** : 본 방송은 2016년 8월 9일 “ [단독] 지하철 역무원이 치마 속 ‘찰칵’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역무원 A씨를 몰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결과, 역무원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 2] : * 펴기사 url

2017. 11. 1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지하철 역무원 여대생에게 몰카 혐의’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7년 11월 22일자 ‘뉴스A’ 프로그램)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